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8호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 직급 및 인원

| 구 분 | 직종 (계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인 원 | 선발구분 | | | | 비고 |
|--------------|-------------|------------|-------------|------|-----|------|-----------|------------------------------|
| | |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보훈청 추천 |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교육행정(교육행정) | 112명 | 96명 | 13명 | 3명 | | |
| | | 전산(전산) | 6명 | 6명 | | | | |
| | | 사서(사서) | 8명 | 8명 | | | | |
| | | 보건(보건) | 8명 | 8명 | | | | |
| | | 시설(건축) | 3명 | 3명 | | | | |
| | | 조리(조리) | 17명 | 13명 | | | 4명 | |
| | 연구사 | 기록연구(기록관리) | 10명 | 10명 | | | |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조리(조리) | 4명 | 4명 | | | | 집단급식소 조리사 근무경력 3년이상 |
| 합 계 | | | 168명 | 148명 | 13명 | 3명 | 4명 | |

※ 장애인·저소득층·보훈청추천 구분모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일반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하지 않습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 경력경쟁임용시험 |
|------|-----------------------------------|-----|----------|
| | 교육행정, 전산, 사서, 보건, 시설(건축), 기록연구 | 조리 | 조리 |
| 과목수 | 5과목 | 3과목 | 2과목 |
| 시험시간 | 100분 | 60분 | 40분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10%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서 결정)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100% 이내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3 시험 과목

| 구 분 | 직종 (계급) | 직렬 (직류) |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교육행정 (교육행정)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 | 전산 (전산)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
| | | 사서 (사서)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 | 보건 (보건)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 시설 (건축) |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 조리 (조리) | 1차: 국어, 한국사 2차: 위생관계법규 |
| | 연구사 | 기록연구 (기록관리) |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조리 (조리) | 1차: 사회 2차: 위생관계법규 |

※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차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도 폐지

- 행정직군의 제2차 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제외

※ 기록연구 직렬 1차 시험과목 중 영어 및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4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최종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연령

| 구 분 | 계급 | 직렬(직류)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교육행정, 전산, 사서, 보건, 시설(건축), 조리 | 18세 이상 |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 | 연구사 | 기록연구 | 20세 이상 |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조리 | 18세 이상 |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다. 거주지 제한

- 교육행정, 전산, 사서, 보건, 시설(건축), 조리 직렬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기록연구 직렬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법률, 시행 1995.3.1.」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함
-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성별: 제한없음

마. 자격(면허)증 · 학력 · 경력

| 구분 | 직렬 (직류) | 자격(면허)증 · 학력 · 경력 제한 | | | | | | | | |
|----------------|----------------------------|---|--|-----------------|-----|-------|------|----------------------------|-----|---------------------------|
| 공개 경쟁 | 사서 (사서)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 | | | | | |
| | 전산 (전산) |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 | | | | | |
| |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 | | | |
| |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보안 | | | | | | | |
| 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 | | | | | |
| 기타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 | | | | | |
| 조리 (조리) |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 | | | | | | |
| | 기능장 | 조리기능장 | | | | | | | | |
| | 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 | | | | | |
| | 기능사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 | | | | | |
| 기록연구 (기록관리)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 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단 2011. 5. 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 5. 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 | | | | | | | |
| 경력 경쟁 | 조리 (조리) | ○ 자격요건 <table border="1"> <tr> <td>등급</td> <td>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td> </tr> <tr> <td>기능장</td> <td>조리기능장</td> </tr> <tr> <td>산업기사</td> <td>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td> </tr> <tr> <td>기능사</td> <td>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td> </tr> </table> ○ 경력요건 -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기능장 | 조리기능장 | 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기능사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 | | | | | | | |
| 기능장 | 조리기능장 | | | | | | | | | |
| 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 | | | | | | |
| 기능사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 | | | | | | | |

- 위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개경쟁】 사서, 전산, 조리, 기록연구, 【경력경쟁】 조리의 경우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기준
 시점)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조리직렬

-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

| 등급 | 종목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
| 기능장 | 조리기능장 |
| 산업기사 |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북어) |
| 기능사 |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북어) |

②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경력기준 :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22. 3. 3.)이전 경력

- 응시대상자는 아래 “9급 조리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를 **2022. 3. 21.(월) 09:00 ~ 3. 25.(금) 18:0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등기우편[3. 25.(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또는 방문 접수하시기 바라며, **서류전형 결과 불합격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채용담당자 앞

<봉투 겉면에 “2022년도 지방공무원 조리직렬 채용서류 재증” 반드시 표기>

- 응시대상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접수기간[**2022. 4. 18.(월) ~ 4. 22.(금)**]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4. 4.(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응시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으니 반드시 서류전형 합격자만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9급 조리직렬 응시대상자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주소이전 사항 포함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② 자격증 사본 1부(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 중 1개 이상)

③ 경력증명서 1부 (「서식 1」 사용, 3년 이상 조리사 경력 확인)

- 경력기간 : 시험시행 공고일(2022. 3. 3.) 이전 경력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에서 발급 가능)

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2」 사용)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응시대상자 제출서류 미제출에 따른 서류전형 불합격 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1) 대상 직렬: 조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보훈청 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경북북부보훈지청(☎ 054-650-14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2022. 4. 18. ~ 4. 22.)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조리 직렬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 시험 시행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사. 장애인 구분모집

1) 대상 직렬: 교육행정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1) 대상 직렬: 교육행정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3)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급여(지원) 신청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 수급자(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구분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신청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
| ○ 접수기간 2022.4.18.(월)09:00 ~ 4.22.(금)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필기시험 | 5.30.(월) | 6.18.(토) | 7.25.(월) |
| ○ 취소기간 2022.4.18.(월)09:00 ~ 4.25.(월)18:00 | 면접시험 | 7.25.(월) | 8.12.(금) | 8.29.(월) |
| ○ 9급 경력경쟁(조리) 직렬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발표일: 4. 4.(월) | | | | |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정보마당> 시험정보> 일반직공무원임용)에 공고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 12. 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 12. 31.까지** 원서접수 사이트(<http://edurecruit.gbe.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인터넷 원서접수

- 1) 접수사이트: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edurecruit.gbe.kr>)
 - 실명인증관련 문의: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 인터넷 접수관련 문의: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54-805-3626)

☞ 구체적인 방법은 원서접수 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의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일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응시인원이 많은 **교육행정 직렬**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필기시험 장소)을 구분하여 접수합니다.
 - 제1시험장: 경산 - 제2시험장: 구미
 - ※ 기타 직렬은 시험장소 공고 시 안내
- 3)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 기록연구사 7,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4)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신용카드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응시자라도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반드시 결제 완료하여야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 ※ 교육행정 직렬 ‘저소득층 구분 모집’의 경우는 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 5)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
 -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크기 100Kb 이하
 - 파일 확장자명: JPG형식, 해상도 100dpi
 -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증명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6) 원서접수 시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신청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7) PC 운영체제 윈도우 7~10과 익스플로러 버전 7~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등)을 수정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 기간에는 수정이나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 취소는 **2022. 4. 25.(월) 18:00**까지 가능함(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 3)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 주민등록초본,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저소득층 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 5) 선발 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6) 조리 직렬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에 한해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원서접수 신청을 하였다해도 원서접수는 취소 처리되며, 응시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2022. 5. 30.(월) 12:00부터 2022. 6. 18(토) 10: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원서접수 신청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 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
|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가산점 합산 방법: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구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구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버림)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렬 (직류) | 자격증 | | 가산 비율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 교육행정 (교육행정) | - | 변호사 | 5% |
| 보건 (보건) |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보건교육사 1급 | 5% |
|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 | |
| | 기능사: 식품가공 |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 3% |
| 시설 (건축) |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 5% |
| |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2)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8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해당직렬: 교육행정, 교육행정(장애인), 전산, 사서, 보건, 조리, 기록연구(기록관리)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장애인 ·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 나. 실시방법: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10 문제 출제

| 구분 | 출제기관 | 출제과목 | 공개여부 | 문제 채점 회수 여부 |
|------|------------|---|------|-------------|
| 위탁출제 | 인사혁신처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중보건, 보건행정, 건축계획, 건축구조 | 공 개 | 미회수 |
| 공동출제 | 17개 시·도교육청 |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 비공개 | 회 수 |

- ※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중 조리직렬의 국어, 한국사 과목과 기록연구직렬의 국어(한문포함), 행정법총론 과목,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험 전과목은 공동출제함
- ※ 위탁출제 과목은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고, 위탁출제 하지 않는 과목은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공고합니다.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40분 전 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마. 필기시험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사.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실 내 시계 없음)**

※ 계산, 알람, 문자 송·수신 기능 등이 없는 아날로그시계(탁상시계 및 전자시계 사용불가)에 한하여 시험시간 중 소지 가능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리 직렬 중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분야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경북북부보훈지청 (☎ 054-650-14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카.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법령을 준용합니다.

타.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를 실시하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장애인 편의지원 등)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54-805-3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구분모집 응시자격 변경
 -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단,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능

202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요건 적용
 -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50% 이상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p>「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p> | <p>「 개인정보보호법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p> |
|---|---|
| <p>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 <p>응시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고유식별 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
|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신규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 자격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p> |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경상북도교육청 신규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p> |
|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 <p><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
| <p>2022. . .</p> <p>성명: (인)</p> | <p>2022. . .</p> <p>성명: (인)</p> |